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개인고객용)

한 국 산 업 은 행

#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이용대상

제4조 약관의 변경

제5조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 이용계좌의 등록 및 삭제

제7조 이용계약의 체결

제8조 이용계약의 해지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10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제11조 서비스의 종류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제13조 이체대상 및 출금한도

제14조 인증

제15조 서비스의 중단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제18조 은행의 의무

제19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산업은행(이하‘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정보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 2.‘이용자’란 이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14세 이상의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임의단체 제외)을 말합니다.
- 3.‘지급인’이란 ‘출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 4.‘수취인’이란 ‘입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 5.‘이용계좌(정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이 가능한 다른 금융기관 등의 이용자 본인 명의 계좌(정보)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계좌(정보)를 말합니다.
- 6.‘출금계좌’란‘서비스’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자금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 7.‘입금계좌’란‘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 8.‘금융정보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정보)의 잔액,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9.‘계좌이체’란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실시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선불계정’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선불계정으로서 오픈뱅킹공동업무 등록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선불계정을 말합니다.
- 11.‘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운영·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합니다.
- 12.‘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별도 제휴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가. ‘출금이체’란 은행의 출금에 동의한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나. ‘입금이체’란 은행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 계좌정보 조회

1) ‘잔액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거래내역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계좌실명조회’란 은행이 ‘수취인’ 또는 ‘이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라. 카드정보 조회

1) ‘카드목록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카드기본정보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기본정보 및 연계된 결제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카드청구기본정보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 및 결제일 등 월별 청구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4) ‘카드청구상세정보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이용내역 등 월별 청구 상세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마. 선불계정정보 조회

1) ‘선불계정목록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 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선불계정연계정보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의 연계 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선불계정잔액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4) '선불계정거래내역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바. 보험정보 조회

1) '보험목록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계약한 보험 상품명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보험납입정보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계약한 보험별로 납입계좌번호 및 납입보험료 등 보험납입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사. 대출리스정보 조회(캐피탈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한합니다)

1) '대출리스목록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계약한 대출·리스 상품명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대출리스기본정보 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계약한 대출·리스별로 상환계좌번호 및 상환방식 등 대출·리스 기본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13. '모바일기기'란 LTE, 5G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칭합니다.

14.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은행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5. '수수료'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16. '안심차단 서비스'란 **오픈뱅킹을 이용한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오픈뱅킹 거래를 이용하지 않을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해 고객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오픈뱅킹을 사전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전자금융거래 관계 법령 등의 용어의 정의 조항을 따릅니다.

### 제3조 (이용대상)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임의단체는 제외합니다.

### 제4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게시합니다.
- ②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약관의 변경 조항을 따릅니다.

### 제5조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 ① 은행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 및 이용정책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및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

### 제6조 (이용계좌의 등록 및 삭제)

- ① 이용자는 이용계좌 등록 시 이용계좌별로 금융정보조회 또는 출금이체 이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만 출금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조회 이용은 필수입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가 출금이체 이용을 선택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의 이용자 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추심이체의 출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은행에 대하여 출금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실시간 출금이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자는 이용계좌를 삭제하거나 출금이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은행은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8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영업점을 통해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③ 은행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사전 통지하며,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서비스 내용 변경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지가 필요한 경우 은행은 홈페이지, 스마트폰뱅킹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가 등록한 거래 또는 전자금융에서 발생하는 일반사항을 이용자의 연락처로 통지 할 수 있으며, 수신자가 이용자 본인이 아닌 경우, 그 수신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에게 정당하게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 전체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를 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중대한 내용은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제10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 ① 은행은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은행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수정하거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의 종류)

- ①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조회 : ‘계좌정보조회’, ‘카드정보조회’, ‘선불정보조회’, ‘보험정보조회’, ‘대출리스 정보조회’ 등
  2. 계좌이체 : 이용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3.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
- ② 은행은 이용자에게 오픈뱅킹공동업무에 부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금융 서비스: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금융상품 가입, 외화 환전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서비스
  2. 잔액 모으기: 다수의 출금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
- ③ 은행은 서비스별 거래 가능한 계좌 등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스마트폰뱅킹에 안내합니다.

##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 ① 제7조에 따라 은행이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가입신청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되며, 이때부터 은행은 이용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이체대상 및 출금한도)

- ① 출금이체의 이체대상은 현금으로 합니다.
- ② 이용자의 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합한 출금이체의 일 이용 한도는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용계좌에서 출금하여 은행 타인 계좌 또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금액은 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에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 ③ 출금이체는 제2항의 한도와 이용계좌의 출금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약정한도를 포함하여 출금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 제14조 (인증)

은행은 서비스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서비스의 중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은행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운영기관 및 은행의 시스템 점검
  2. 개별서비스 점검, 변경 등 개별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 ③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수수료)

- ① 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게시합니다.
- ③ 수수료 변경 사유가 발생 시 수수료의 변경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합니다.

####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은행이 통지한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 정보,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4. 은행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은행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은행의 정보를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9.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10. 은행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11.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양수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12.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자신의 모바일기기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1. 자신의 명의를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등의 분실, 도난
3. 비밀번호의 누설
4.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제2항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사고·장애시의 처리 조항 및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을 따릅니다.

④ 은행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

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8조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하는 등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제19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분쟁사항 중 운영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기관의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직접 대응 가능하며, 이 경우 은행과 운영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

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2. 12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1)

제1조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 부 칙(2)

제1조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 부 칙(3)

제1조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 부 칙(4)

제1조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 부 칙(5)

제1조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